

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-16호

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

「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
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2023년 3월 2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「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
발령한다.

2023년 3월 2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

군포시의회 훈령 제23호

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9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
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
경우에는 「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에 따라 군포시의회
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6조 및
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 된다. 다만, 의회사무과장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된다.

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전심사에서 제외한다.

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·단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)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. 이 경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
2. 시민·사회단체, 기관,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심사)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,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

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12조(중전의 제10조)제2항 중 “제9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략)	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른 교 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 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제11조-----.
제5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 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및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 사를 한 것으로 본다.	제5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	3. 10명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4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·운영하며, 공무국외 출장자 본인,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	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·단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)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및 각 전문위원으로 하며, 제2항 단서 조항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

2. 시민·사회단체, 기관,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

③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「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.

<삭 제>

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
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
하고,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
며,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
별표 1과 같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
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하
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
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
과 소속 팀장이 된다. 다만, 의
회사무과장이 공무국외출장 대
상자인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
이 된다.

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
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
안전심사에서 제외한다.

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
를 다른 기관·단체(외국의 정
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
한다)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
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
원회를 구성한다. 이 경우 외부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
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

<신 설>

한다.

1.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
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
진 사람

2. 시민·사회단체, 기관, 학계
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
성을 인정한 사람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
사 및 서기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심사) ① 위원회
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
고,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
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
만,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
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
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
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
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항에
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
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
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
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6조 ~ 제9조 (생략)

제10조(사후관리 등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,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11조 (생략)

제8조 ~ 제11조 (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제12조(사후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제11조-----

--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
-----.

제13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